

의안번호	2220163
의 퇴 인	이강일의원
회 답 일	2026.8.11.
추계번호	26B3743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(제1항) 1. “근로자”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	의무규정
2	안 제2조의2 (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) 신설	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(이하 “노무제공자”라 한다)은 민사상 권리·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「노동위원회법」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한다.(제1항)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(이하 “노무수령자”라 한다)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.(제2항) 1.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에서 노무수령자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2.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3.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,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추정에 관한 법적 효과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2	안 제2조의2 (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추정) 신설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종류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, 노무제공자는 민사상 권리·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를 포함한 행정상 분쟁해결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단 없이 근로자로 추정하고, 노무수령자가 이를 반증하는 경우¹⁾ 근로자성 추정이 부정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무제공자 추정에 대한 반증 책임이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(이하 “노무수령자”)에게로 전환됨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노무수령자로서 근로자 추정을 반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성 추정을 부정하기 위하여 ‘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는 자’가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1.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및 실제 업무수행에서 노무수령자로부터 지휘·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
2. 노무제공자의 업무가 노무수령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
3.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된 거래, 일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

- 다만,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근로자 추정에 대한 반증 건수와 이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